

建築法中改正法律(案)

政府에서 (建設部) 제안한 建築法中 改正法律案이 지난번 臨時国会때, 国会建設委員會에서 一部 修正 採択하고, 国会法司委에 回附했는데 오는 定期 国会에서 通過될 것이 거의 확실시 되는 바, 同 建築法 改正案에서 第53條 (面積, 높이 및 層數의 算定等)의 2項 新設로 協會 總會에서까지 수차 논란되었던 正화조 설계는 오물 청소법 제14條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도록 규정함으로써 부당한 규제가 없어지게 된 점과 第6條, (建築物의 設計 및 監理等)에 第7項을 新設하여 工事監理者에게 不利益을 줄 수 없도록 규정한 것과, 대체적으로 會員業務에 不利한 方向으로 改正되지 않은 것을 多幸으로 여기며, 本協會에서는 建設委員會에서 採択한 同 建築法 改正法律案과 本協會에서 政府에 建議한 同法 改正案의 內容을 同時에 掲載하여 봅니다.

〈編輯者・註〉

現 行	改 正 案	現 行	改 正 案
<p>21. “設計図書”라 함은 建築物의 建築·大修繕 또는 重要變更이나 建築設備의 設置 또는 工作物の 築造에 관한 工事用的 図面·構造計算書 및 示方書を 말한다.</p> <p>23. “工事施工者”라 함은 建築物의 建築·大修繕 또는 重要變更의 工事を 都給契約에 의한 경우에는 그 受給人 都給契約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스스로 그 工事を 行하는 者를 말한다.</p>	<p>21. --- 建築 또는 大修繕이나 ---</p> <p>23. --- 建築 또는 大修繕의 ---</p>	<p>平方미터 이내의 것인 경우에는 미리 市長·郡守에게 申告하여야 한다.</p> <p>1~3 (省略)</p> <p>4. 其他 都市計劃区域内 및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地域안에 있어서의 建築物</p>	<p>1~3 (左 同)</p> <p>4. 其他 都市計劃区域, 国土 利用管理法의 規定에 의하여 指定된 工業地域·聚落 地区와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区域안에 있어서의 建築物</p> <p>②市長·郡守는 第一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하거나 申告를 接受하였을 때에는 建設部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建築物台帳에 이를 記載하고 保管하여야 한다.</p>
<p>第3條 (適用에서의 除外)</p>	<p>第3條 (適用에서의 除外)</p>	<p>(新 設)</p>	<p>③建築主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거나 申告를 하고 建築工事を 함에 있어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輕微한 變更은 이를 許可 또는 申告없이 變更할 수 있다.</p>
<p>①(省略)</p> <p>②第3章 내지 第5章의 規定은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경우를 除外하고 都市計劃区域外에서는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.</p>	<p>① (左 同)</p> <p>② --- 都市計劃区域以外の 区域과 国土利用管理法의 規定에 의하여 指定된 工業地域 및 聚落地区를 除外한 区域에서는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.</p>	<p>(新 設)</p>	<p>④市長·郡守은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用途, 規模構造의 建築物 또는 設備를 가진 建築物의 建築(大統領令으로 정하는 規模이하의 増築·改築을 除外한다)을 許可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建設部長官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.</p>
<p>第4條 (職權의 委任)</p>	<p>第4條 (職權의 委任)</p>	<p>(新 設)</p>	<p>(新 設)</p>
<p>①(省略)</p> <p>②(省略)</p> <p>(新 設)</p>	<p>①(左 同)</p> <p>②(左 同)</p> <p>③郡守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이法의 規定에 의한 權限의 一部를 邑, 面長에게 委任할 수 있다.</p>	<p>第6條 (建築物의 設計 및 工事 監理등)</p>	<p>第6條 (建築物의 設計 및 工事 監理등)</p>
<p>第5條 (建築許可)</p> <p>다음 各号에 掲記하는 建築物의 建築 (増築의 경우에는 그 増築으로 인하여 當該建築物의 規模가 第1号 내지 第3号에 該當하게 되는 경우를 包含한다.)·大修繕 또는 重要變更을 하고자 하는 者는 미리 市長·郡守의 許可를 얻어야 한다.</p> <p>다만, 都市計劃法의 規定에 의한 防火地区外에서 建築物를 増築 또는 改築하고자 할 때에 그 増築 또는 改築하는 部分의 延面積이 10</p>	<p>第5條 (建築許可) ①</p> <p>--- 또는 大修繕을 하고자 하는 者는 --- 増築·改築 또는 大修繕하고자 할 때에 그 増築·改築 또는 大修繕하는 ---</p>	<p>①建築士法 第4條 및 第5條의 規定에 의하여 建築士가 아니면 設計할 수 없는 建築物의 建築·大修繕 또는 重要變更을 하고자 할 때에는 각각 該當建築士의 設計에 의하여야 한다.</p> <p>②建築主는 建築士法 第4條 및 第5條의 建築物중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規模이상의 建築·大修繕 또는 重要變更의 工事を 하고자 할 때에는 각각 該當 建築士를 工事 監理者로 定하여야 한다.</p> <p>③前項의 規定에 의한 工事監理者는 當該工事を 監理함에 있어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이나 処分에 違反된 事項을 發見한 때에는 이를 是正하도록 建築主와 工事施工者에게 勸告 하여야 하고, 이어 不応할 때에는 建</p>	<p>① --- 建築 또는 大修繕을 하고자 ---</p> <p>② --- 建築 또는 大修繕의 工事を ---</p> <p>③第2項의 ---</p>

現 行	改 正 案	現 行	改 正 案
<p>設部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遲滯없이 이를 市長 郡守에게 報告하여야 한다.</p>	<p>----- ----- -----</p>	<p>掘鑿部分에 대하여 建設部令으로 定하는 基準에 따라 危險發生의 防止 環境의 保存 其他 必要한 整理를 하여야 한다.</p>	<p>----- ----- ----- -----</p>
<p>④~⑥ (省 略) (新 設)</p>	<p>④~⑥ (左 同) ⑦建築主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違反事項을 報告한 工事監理者에게 이로 因하여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工事監理者의 指定을 取消 또는 變更하거나 監理에 對한 報酬의 支給을 拒否 또는 遲延시키거나 其他 어떠한 不利益도 주어서는 아니된다.</p>	<p>(新 設)</p>	<p>----- ----- ----- -----</p>
<p>第7條(建築物에 관한 檢査 및 使用承認)</p>	<p>第7條(建築物에 관한 檢査 및 使用承認)</p>	<p>②市長·郡守는 前項의 整備狀態가 不備 또는 未備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必要한 措置를 命하고 그 措置에 응할 때까지 第7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竣工檢査를 거부할 수 있다.</p>	<p>②工場의 建築主는 그 垆地중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面積에 該當하는部分에 대하여 建設部令으로 定하는 基準에 따라 公害防止 및 造景을 위한 植樹等 必要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.</p> <p>③市長·郡守는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違反한 者에 對하여는 그 義務履行에 必要한 措置를 -----</p>
<p>①建築主는 建築工事を 着手하거나 完了한 때에는 着手하거나 完了한 날로부터 7日 이내에 市長·郡守에게 申告하여야 한다. 이 경우 前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工事監理者를 정한 建築工事의 着手 또는 完了에 관한 申告를 함에 있어서는 當該 工事監理者가 그 申告書에 署名하여야 한다.</p>	<p>① ----- 着手할 때 또는 第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(第8條의 規定에 依한 協議 및 承認을 包含한다)를 받거나 申告를 한 建築物의 建築工事を 完了한 때에는 着手하거나 完了한 날로부터 7日 이내에 市長·郡守에게 申告하여야 한다. 이 경우 第6條 第2項의 規定에 -----</p>	<p>第10條 (構造耐力) ① (省 略) ② 第5條 第2号 및 第3号에 該當하는 建築物을 建築할 때에는 構造計算에 依하여 構造의 安全性을 確認하여야 한다.</p>	<p>第10條 (構造耐力) ① (左 同) ① 第5條 第1項 第2号 및 第3号에 該當하는 建築物을 建築하거나 大修繕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그 構造의 安全을 確認하여야 한다.</p>
<p>②市長·郡守는 前項의 規定에 의한 工事完了申告를 接受한 때에는 接受한 날로부터 7日 이내에 竣工檢査를 實施하고 檢査에 合格된 建築物에 對하여는 그 建築主에게 竣工檢査畢證을 交付하여야 한다.</p>	<p>②市長·郡守는 第1項의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	<p>第11條 (大規模 建築物의 主要構造部) ① (省 略) ② (本文 省略) 다만, 特別한 補強을 함으로써 構造計算에 依하여 그 構造의 安全이 確認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	<p>第11條 (大規模 建築物의 主要構造部) ① (左同) ② (左同) 다만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特別한 補強을 함으로써 그 構造의 安全이 確認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
<p>③前項의 規定에 의한 竣工檢査畢證의 交付를 받은 後가 아니면 그 建築物을 使用하거나 使用시키지 못한다. 다만, 市長·郡守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期間에 竣工檢査를 實施하지 아니하거나 期間을 정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假使用의 承認을 한 때에는 使用하거나 使用시킬 수 있다.</p>	<p>③第2項의 規定에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	<p>第17條 (特殊建築物의 耐火構造) (本文 省略) 1. (省 略) 2. 建築物의 2層을 病院·共同住宅·寄宿舍·旅館·호텔 또는 倉庫의 用에 共하는 境遇에 있어서 그 用에 共하는 部分의 바닥面積의 合計가 400平方미터 이상인 것. 3. 建築物의 3層以上の 層을 學校·病院·劇場·映画館·演芸場·觀覽場·集會場·共同住宅·寄宿舍 또는 旅館·호텔·百貨店 또는 市場의 用에 共하는 것. 4. (省 略) 5. (省 略)</p>	<p>第17條 (特殊建築物의 耐火構造) (左同) 1. (左同) 2. ----- 宿泊業用建築物 또는 ----- ----- 3. ----- ----- ----- 宿泊業用 建築物 ----- ----- 4. (左同) 5 (左同)</p>
<p>④ (省 略)</p>	<p>④ (左 同)</p>		
<p>第9條의 2 (土地掘鑿部分에 대한 整理)</p>	<p>第9條의 2 (土地掘鑿部分에 대한 整理 등)</p>		
<p>①建築主는 垆地의 造成 其他 建築工事に 隨伴하여 土地를 掘鑿한 경우에는 當該</p>	<p>①垆地를 造成하거나 建築工事に 隨伴하여 土地를 掘鑿한 者는 當該 掘鑿部分에</p>		

現 行	改 正 案	現 行	改 正 案
<p>⑤第1項 내지 第4項의 規定에 의한 建築物의 建築에 관하여는 都市計画法 第24條 내지 第28條·第33條 내지 第53條 및 第86條의 規定을 準用 한다.</p> <p>(新 設)</p> <p>第39條 (建 葬 率)</p> <p>①建築面積의 垜地面積에 대한 比率(이하 建葬率이라 한다)은 다음 각호의 比率을 超過하여서는 아니 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(省 略) (省 略) 住居地域·準住居地域 工業地域·準工業地域 專用工業地域의 指定이 없는 地域에 있어서는 10분의 6 商業地域에 있어서는 10분의 7 商業地域外的 防火地區 內에 있는 建築物로서 그 主要構造部가 耐火構造인 10분의 7 (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街路의 모퉁이에 있는 垜地 및 이에 準하는 垜地로서 市長·郡守가 指定하는 區域內에서는 10분의 8). 商業地域內的 防火地區 內에 있는 建築物로서 그 主要構造部가 耐火構造인 것은 10분의 8 (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街路의 모퉁이에 있는 垜地 및 이에 準하는 垜地로서 市長·郡守가 指定하는 區域內에 있어서는 10분의 9) 	<p>의한 建築物의 建築 및 特定街區 整備地區 內의 國公有地에 關하여는 都市計画法 第24條 내지 第28條·第33條 내지 第53條·第82條 및 第86條의 規定을 準用 한다. 다만, 當該 地區 內의 土地(公共 施設 用地를 除外한다.)</p> <p>全部가 1人所有인 境遇에 는 都市計画法 第34條·第39條 乃至 第44條의 規定을 準用하지 아니 한다.</p> <p>第38條 (聚落地區內에서의 建築物) 國土利用管理法의 規定에 의하여 指定된 聚落 地區內에 있어서는 建築物의 建築制限에 關하여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當該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定한다.</p> <p>第39條 (建 葬 率)</p> <p>①建築面積 (垜地에 2 이상 의 建築物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建築面積의 合計로 한다)의 垜地面積에 대한 比率(이하 “建葬率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호의 比率을 超過하여서는 아니 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(左 同) (左 同) 住居地域·工業地域·準工業地域·專用工業地域 과 地域의 指定이 없는 區域에 있어서는 10분의 6 商業地域과 準住居地域에 있어서는 10분의 7 (削 除) 商業地域 또는 準住居 地域內的 防火地區內에 <p>빛 이에 準하는 垜地에서는 10분의 9)</p>	<p>②防火地區外的 地區에 있어 特히 필요한 경우에 는 建築面積의 垜地面積에 대한 此率을 前項에 規定 하는 此率을 超過하지 아니하는 範圍안에서 따로 大統領令으로 制限하여 定할 수 있다.</p> <p>(新 設)</p> <p>第40條 (容積率)</p> <p>①建築物의 建築延面積의 垜地面積에 대한 比率(이하 “容積率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호의 範圍안에서 大統領令으로 定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~3 (省 略) (省 略) <p>(新 設)</p> <p>第42條 (違反建築物등에 대한 措置)</p> <p>①(本文 省略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이 法 또는 이 法에의 하여 發하는 命令의 規定에 違反하여 建築物의 建築·大修繕 또는 主要變更을 하였을 때 ②保安上 또는 衛生上 有害하다고 認定될 때 (省 略) 第5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은 날로부터 6 月이내에 工事に 着手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竣工할수 없다고 認定될 때 ②前項 第1호에 該當 하는 建築物에 대하여는 電話·電氣·水道를 設置하거나 供給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建築物을 使用하여 	<p>②</p> <p>. 建葬率을 第1項에 規定</p> <p>.</p> <p>③第1項 第4号·第6号의 規定 및 第2項의 規定 (同項의 規定에 依하여 建葬率을 10분의 6未滿으로 制限하여 定한 境遇를 除外한다)에 不拘하고 住居用建築物과 工業用 建築物의 建葬率은 10분의 6을 超過할 수 없다.</p> <p>第40條 (容積率)</p> <p>①建築物의 延面積 (垜地에 2 이상의 建築物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延面積의 合計로 한다)의 垜地面積에 대한 比率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~3 (左 同) (左 同) <p>第41條의 2 (垜地 안의空地) 建築物을 建築 하고자 할 때에는 建築線 및 隣接 垜地 境界線으로부터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一定한 距離를 띄어 建築하여야 한다.</p> <p>第42條 (違反建築物등에 대한 措置)</p> <p>①(左 同)</p> <p>① 建築 또는 大修繕을</p> <p>.</p> <p>②保安上 또는 衛生上 顯著히 有害하다고 認定될 때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(左 同) 第5條 第1項 本文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은 날로부터 1年 <p>②第1項 第1호에 該當</p>

現 行	改 正 案	現 行	改 正 案
<p>行할 다른 法令에 의한 營業 기타 行為를 許可할 수 없다.</p>	<p>-----</p>	<p>建築物을 築造하고자할 때에는 그 建築物의 存置期間을 定하여 着工 5日前에 市長·郡守에게 申告하여야 한다.</p>	<p>-----</p>
<p>③~④ (省 略)</p>	<p>③~④ (左 同)</p>	<p>(新 設)</p>	<p>-----</p>
<p>⑤누구든지 前項의 標識設置를 拒否 또는 妨害하거나 이를 損하여서는 아니된다.</p>	<p>⑤누구든지 第4項의 -----</p>	<p>-----</p>	<p>-----</p>
<p>第42條의 2 (違反 建築物의 設計者 등에 대한 措置)</p>	<p>第42條의 2 (違反 建築物의 設計者 등에 대한 措置)</p>	<p>第52條 (建築物의 垆地가 区域·地域 또는 地区의 内外에 걸칠때의 措置)</p>	<p>第52條 (建築物의 垆地가 区域·地域 内外에 걸칠때의 措置)</p>
<p>①市長·郡守는 前條 第1項 第1號의 規定에 의하여 違反建築物에 대한 措置를 하였을 때에는 10日 이내에 當該 建築物의 設計者·工事監理者·工事施工者의 名稱과 기타 建設部令으로 정하는 事項을 建設部長官에게 報告하여야 한다.</p>	<p>①市長·郡守는 第42條 第1項 第1號의 -----</p>	<p>垆地가 이 法에 規定하는 垆地·構造 또는 建築設備에 관한 禁止 또는 制限을 받는 区域·地域 또는 地区(防火地区를 除外한다)의 内外에 亘하는 경우에는 그 建築物 또는 垆地의 全部에 대하여 그 垆地의 過半이 屬하는 区域·地域 또는 地区内の 建築物에 관한 規定을 適用한다.</p>	<p>-----</p>
<p>②建設部長官은 前項의 規定에 의한 報告를 받은 때에는 當該 設計者 工事監理者·工事施工者에 대하여 建築士法 또는 建設業法의 規定에 의한 免許 및 登錄의 取消나 營業停止 등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.</p>	<p>②建設部長官은 第1項의 -----</p>	<p>-----</p>	<p>-----</p>
<p>第43條 (報告 및 檢査등)</p>	<p>第43條 (報告 및 檢査등)</p>	<p>第53條 (面積·높이 및 層數의 算定) 建築物의 垆地·面積·延面積·바닥面積 및 높이·建築物의 처마·천정 및 바닥 높이나 建築物의 層數의 算定方法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.</p>	<p>第53條 (面積·높이 및 層數의 算定等) ①</p>
<p>① (省 略)</p>	<p>① (左 同)</p>	<p>-----</p>	<p>-----</p>
<p>②前項의 規定에 의하여 檢査나 試驗을 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表示하는 證表를 携帶하여 關係인에게 提示하여야 한다.</p>	<p>②第1項 規定에 -----</p>	<p>-----</p>	<p>-----</p>
<p>第45條 (承認 및 認可)</p>	<p>第45條 (承認 및 認可)</p>	<p>(新 設)</p>	<p>第53條의 4 (同前)</p>
<p>①다음 各號의 事項에 대하여는 서울特別市長, 釜山市長은 建設部長官의 市長·郡守는 道知事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.</p>	<p>① -----</p>	<p>-----</p>	<p>第6條 第1項의 規定을 適用함에 있어서 建築物에 附隨되는 液狀廢棄物 淨化槽에 관한 設計의 경우에는 汚物淸消法 第14條의 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한다.</p>
<p>1~3 (省 略)</p>	<p>1. ~ 3. (左 同)</p>	<p>-----</p>	<p>第53條의 6 (標準設計圖의 活用)</p>
<p>(新 設)</p>	<p>4. 第42條 第1項 第2號의 規定에 의한 建築許可의 取消措置와 建築物의 撤去·改築 또는 大修繕의 命令</p>	<p>-----</p>	<p>① (左 同)</p>
<p>第47條 (假設建築物)</p>	<p>第47條 (假設物築物)</p>	<p>第53條의 6 (標準設計圖의 活用)</p>	<p>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標</p>
<p>① (省 略)</p>	<p>① (左 同)</p>	<p>① (省 略)</p>	<p>-----</p>
<p>②災害復舊·興行·展覽會 工事用 假設建物 其他의 類似한 用途에 供하는 臨時的인 假設物築物로서 建設部令으로 정하는</p>	<p>② -----</p>	<p>②前項의 規定에 의한 標</p>	<p>-----</p>

現 行	改 正 案	現 行	改 正 案
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自 然人의 業務에 關하여 前 3 條의 規定에 該當하는 行爲를 하였을 때에는 그 行爲者를 罰하는 外에 그 法人 또는 自然人에 對하 여도 各 本條의 罰金刑을 科한다. 다만 그 違反行爲 를 防止하기 위하여 相當 한 注意와 監督을 怠慢히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	第54條 내지 第56條의 2 의 規定에	第58條 (罰則規定의 委任) 第26條 第2項 또는 第 33 條의 規定에 의하여 정하는 條例에는 罰則으로서 2万 원 이하의 罰金에 處하는 規定을 둘 수 있다.	第58條 (罰則規定의 委任) (削 除)

建築設計作品 懸賞募集公告

社団法人 韓國建築家協會에서는 '釜山市立圖書館 新築計劃(設計) 懸賞募
集을 아래 요령과 같이 公募합니다.

- 1) 對 象 : 釜山市立圖書館 新築計劃(設計)
- 2) 接受期間 : '75年 10月 10日 ~ 23日
- 3) 願書配付 및 接受 : 芸總 釜山支部
- 4) 審査發表 : '75. 10. 27
- 5) 出品料 : 1 点當 1,000원
- 6) 賞 金 : 金賞(1名) 메달 및 상장 600,000원
銀賞(1名) 메달 및 상장 60,000원
銅賞(1名) 메달 및 상장 20,000원

特選 및 人賞 : 메달 및 상장

- 7) 展示期間 : '75. 11. 3 ~ 22 (場所는 追後發表)
- 8) 收容人員 : 3,000名 정도.
- 9) 圖面規格 : 120cm × 240cm (내외)
- 10) 圖面種類 : ㄱ) 圖面說明 및 配置圖 스케일 : $\frac{1}{100} \sim \frac{1}{300}$
 ㄴ) 平面圖 · 立面圖 : $\frac{1}{100}$
 ㄷ) 주단면도 : $\frac{1}{100} \sim \frac{1}{200}$

其他 詳細한 것은 芸總 釜山支部 및 韓國建築家協會 釜山支部에
하시알.

1975. 8.

主 催 : 社団法人 韓國建築家協會 釜山支部

協 贊 : 芸總 釜山支部

※ 金賞 作品에 대하여는 本設計資格을 부여할 수 있다.